

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
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기획행정위원회

<의안번호 제545호>

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
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 의 일 자 : 2020. 3. 4.
- 발 의 자 : 김영진·이옥선·성낙인·박문철·박옥순·성연석·신영욱·
예상원·이정훈·황재은·표병호·김경수·송순호·장규석·
빈지태·김석규·김하용·김호대·옥은숙·이옥철·김진욱·
류경완·박준호·이상열·남택욱·손덕상·송오성·신용곤·
이상인·이종호·김진기·김경영·심상동·이영실·장종하·
김지수 의원(36명)
- 회 부 일 자 : 2020. 3. 5.
- 상정(의결)일자 : 2020. 4. 23.
(제37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, 공익신고의 범위·대상을 확대
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책임있는 경상남도를 조성
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도지사과 공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·제4조)
- 2)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1조)
- 3) 공익제보의 접수, 처리, 중복 접수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제14조)
- 4)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5)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- 6)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- 7)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포상금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- 8)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구조금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- 9)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- 10) 보상금등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)
- 11)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22조)
- 12)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)
- 13) 공익제보 등의 도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련법규 :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무원 행동강령」
- 2) 소요예산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
- 3) 기 타
 - 가) 입법예고 : 2020. 1. 29 ~ 2. 5, 제출의견 없음
 - 나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다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라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마) 지역인재고용영향평가 : 해당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가. 검토내용

□ 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「경상남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」 및 「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확대하여 모든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본칙 총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본칙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의(안 제2조),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, 경상남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(안 제5조~안 제11조), 공익제보의 접수 등(안 제12조),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(안 제15조), 불이익 금지(안 제16조), 보상금, 포상금, 구조금(안 제17조~안 제19조) 등을 규정하고, 부칙에는 「경상남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」를 폐지하고 본 조례 시행일 등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공익제보, 부패행위 신고, 불이익조치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
- 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에서는 공익제보의 공정한 조사와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5조~안 제11조에서는 공익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

○ 안 제12조(공익제보의 접수 등)에서는 공익제보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,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음

○ 안 제15조(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), 안 제16조(불이익 금지)에서는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.

※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 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

○ 안 제17조~안 제21조에서는 보상금과 포상금, 구조금의 지급사유, 지급기준,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

※ 법률 및 타 시도 보상금, 포상금, 구조금 현황

연번	시·도	보상금 상한액	포상금 상한액	구조금 상한액
	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	30억원	2억원	평균임금 2배 이내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지급
1	서울시	상한 없음	2억원	평균임금 2배 이내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지급
2	부산시	30억원	2억원	상 동
3	울산시	지급규정은 있으나, 상한액 규정 없음	2억원	상 동
4	경기도	상한 없음	2억원	상 동
5	충북도	30억원	지급규정은 있으나, 상한액 규정 없음	상 동
6	제주도	30억원	2억원	상 동
7	대구시	지급규정은 있으나, 상한액 규정 없음	지급규정은 있으나, 상한액 규정 없음	지급규정은 있으나, 상한액 규정 없음

□ 검토의견

○ 공익제보(whistle-blowing)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으며,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함

- 공익제보는 복잡·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공직사회 부패 및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고발하는 용기있는 행동으로, 이를 권장하고 보호함으로서 사회정의 실현과 건전한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.

- 우리 도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신고별로 나뉘어져 있고, 신고자의 보호와 보상을 위한 규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

구분	공익 신고	부패행위 신고	행동강령위반 신고
근거 법령	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「경상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	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, 「경상남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」	「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」
대상 행위	공익과 관련 법률(284개) 위반으로 벌칙·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	법령을 위반해 사익을 도모하거나, 공공기관 재산상 손실을 가한 행위	공정한 직무수행 저해, 직무관련 영리행위, 알선 및 청탁,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
피신고자	일반 국민 (일반인으로써의 공무원 포함)	공직자 (공무원, 교직원, 공직유관단체)	경상남도 공무원 (의회 소속 공무원 포함)
신고 기관	감독기관, 수사기관, 권익위 등	경남도지사(감사관), 권익위	경남도지사(감사관), 권익위

-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이 없으며, 부패신고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두고 있으나 공익 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음

※ 동 조례 제정 시 「경상남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」, 「경상남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시행규칙」, 「경상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는 폐지될 예정임

- 동 조례안은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제보 창구를 일원화하고 공익 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청렴한 경남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○ 재적위원 : 10명, 재석위원 : 7명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첨부서류 :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 함으로써 경남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상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익제보”란 경상남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,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말한다.
2. “공익제보등”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공익제보자”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.
4. “공익제보자등”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.
5. “공익신고”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.
6. “부패행위 신고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.
7. “행동강령위반 신고”란 「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.
8. “불이익조치”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9. “공직자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

를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10. “내부 공익신고자”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경상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공익제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직자의 책무)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공직자는 각종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익제보지원위원회)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공익제보자등의 보호,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2. 공익제보등 관련 보상금, 포상금 또는 구조금(이하 “보상금등”이라 한다) 지급에 관한 사항
3.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,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공익제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, 위촉

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경상남도의회 의원
2.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
3.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, 비영리 민간단체·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인 경우
2. 위원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등 안건이 발생하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공익제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공익제보의 접수 등)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.

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공익제보자의 이름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
2. 위반행위를 하는 자
3. 공익제보 내용
4.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(口述)로 신고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을 경우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의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.

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.

제13조(공익제보의 처리 등)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창구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·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중복 접수의 처리) 도지사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

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5조(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)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,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6조(불이익 금지)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7조(보상금) ① 공익제보자(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)는 공익제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

2. 과징금(인허가 등의 취소·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·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)의 부과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

가. 지방세의 부과

나.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

다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

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이내를 말한다. 다만,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④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, 보상금의 상한은 30억원으로 한다.

⑤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사항은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도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,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⑧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,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,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⑨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(포상금)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지급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지급대상을 추가하거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구조금)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도지사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육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·입원·투약·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
2. 전직·과건근무·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
3.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·노무사 등의 수임료
4.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(이하 “월평균액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액. 다만,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(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포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)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
5.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제보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, 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

⑤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(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)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,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

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등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.

제21조(보상금등의 환수 등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의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의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보상금등의 신청인이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
2. 제20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
3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

제22조(포상)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, 개인, 기업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

제23조(교육지원)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공익보호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(홍보 등)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제보 지원 제도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1.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
2. 전문가 포럼,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

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경상남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경상남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」에 따른 신고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]

행동강령위반 신고 보상금의 산정기준(제17조제3항 단서 관련)

지 급 대 상	지 급 기 준
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•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
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 20퍼센트 이내 •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
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·청탁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•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
그 밖의 행동강령위반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

「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(안 제17조)
-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(안 제18조)
-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(안 제19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 “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”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- 최근 3년간(2017 ~ 2019) 공익제보로 인한 지원금의 총액이 13,627천원이고, 지난 13년간 부패사건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은 0건임
- 위의 자료로 볼 때,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므로, 관련 조례상 비용추계 제외대상에 해당됨

4. 작성자

감사관 김제홍